

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립예술단 및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행정기구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립예술단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- 예술단 부단장 변경 : 문화예술회관장 → 평생교육원장

나. 구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- 위원회 부위원장 변경 : 문화예술회관장 → 평생교육원장
- 부위원장이 변경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장은 위원으로 위촉함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.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부단장은 문화예술회관장”을 “부단장은 평생교육원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부위원장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되며, 위원은 문화예술과장”을 “부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이 되며, 위원은 문화예술회관장, 문화예술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① 구미시립예술단 (이하 “예술단”이라 한다)의 단 장은 부시장이 되며, <u>부단장은</u> <u>문화예술회관장</u> 이 된다.	제2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부단장은</u> <u>평생교육원장</u> -----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 략)	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 과 같음)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<u>부</u> <u>위원장은 문화예술회관장</u> 이 되 며, <u>위원은 문화예술과장</u> , 각 단 의 지휘자 · 안무자 · 연출자와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	② ----- <u>부위</u> <u>원장은 평생교육원장이</u> 되며, <u>위원은 문화예술회관장, 문화예</u> <u>술과장</u> ----- ----- --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생략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~ 차. 생략

3. ~ 4. 생략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가. ~ 다. 생략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6. 생략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제19조(소장)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20조(소관사무)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구미시평생교육원

가. ~ 라. 생략

마. 시립예술단 운영

바. ~ 카. 생략

소관 실·과		문화예술회관
입 안 자	관 장	박 말 기
	담 당	윤 희 정
	담 당 자	김 현 길 (480-4562)